##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은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

김 혁 철

자본주의국가의 형사재판은 그것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나《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미화분식되여왔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의 요구와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인민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으로 복무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구호는 원래 부르죠아지가 자기 법의 계급적본질을 숨기고 근로인민을 속여 그들을 부르죠아법앞에 순종시키기 위한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일성전집》제21권 475폐지)

자본주의국가의 형사재판은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실현하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이라는데 그 계급 적본질이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 중을 억압착취하는 사회이다. 특히 제국주의시기에 와서 대독점자본가들이 국가권력을 직 접 틀어쥐고 자기의 독점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감으로써 착취계급과 인민대중사이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은 극도에 달하게 된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는 무너져가는 자본주의제도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반동적인 형 사소송제도들을 더욱 개악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진압하고있으며 무고한 근로인민대중을 법정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고있다.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이 《국민을 위한 재판》으로 미화분식되고 《민주주의》와 《공정성》, 《인권》과 《정의》를 표방하고있지만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폭압수단, 부르죠아 독재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반동성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이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이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재판소의 구성에서 단독제를 허용함으로써 판사의 자의와 전횡을 합법화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국가의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제를 재판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구성원칙으로 표방하면서도 단독제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합의제와 단독제 를 함께 적용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일련의 사실이 명백하고 사건경위가 간단하며 죄행이 비교적 경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층재판소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의 재판은 보통의 제1심재판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화한 재판절차로 진 행되고있다.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심문과 증거제출, 변론 등의 절차를 규제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지킬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수도 있으며 심리를 진 행하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합의제에서는 사건의 심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될수는 있어도 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고 판사의 책임감이 약화될《위험》이 있는 반면에 단독제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피고》를 비롯한 재판관계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부담》을 줄일수 있게 하고 판사의 책임감을 강하게 하는 《우점》이 있다는것으로 단독제의《합리성》을 주장하고있다.

형사재판에서 취급처리되는 모든 문제들은 크든작든 다 사람의 운명문제와 결부되여 있다. 그런것만큼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고 해결하는 재판은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진 행되여야 한다.

재판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제기된 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집체적협의를 보장하는데 있다. 사건취급처리과정에는 개별적인 판사의 능력만으로는 원만히 처리할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주객관적인 요인들의 작용으로 하여 판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올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만일 주관과 독단이 허용되게 된다면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낼수 없는것은물론 판사의 자의와 전횡을 극복할수 없게 된다.

부르죠아형사재판에서 단독제를 허용하고있는것은 사실상 재판에서 취급처리되는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있는 부르죠아계급의 반인민적인 립장의 산물이며 범죄의 끊임없는 장성과 그로 인한 재판소업무량의 과중한 증대로하여 궁지에 몰린자들의 궁여지책에 불과할뿐이다.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이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이라는것은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피고의 권리보호》의 미명아래 날치기재판으로 피고에게 형벌을 가하는데서 표현된다.

미국의 련방과 모든 주들에서 적용되는 죄상인정여부수속절차는 소추자의 기소철회나 소추포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주동적지위와 역할을 주장하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있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이 절차가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다같이 서로의 일정한 요구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당사자들의 소송비용과시간을 절약하는 《실용적인 방식》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면서 피고의 《유죄답변》이 《피고의 자원적인 의사》로 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이 《자원적인 의사》인가를 확증할 책임을 재판소에 지우고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결코 서로의 리익을 추구할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죄상인정여부수속절차라는것은 한갖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유죄답변은 법관료배들의 강압과 협박의 결과에 불과하다.

검사는 피고를 《유죄답변》에로 끌어내기 위하여 변호측(변호인과 피고)과 흥정을 진행한다. 형법에서 하나의 행위를 여러개의 조문에서 규제한 공간을 리용하여 검사들은 유죄답변흥정시에 재판심리를 요구하는 피고들에게 보다 중한 죄목으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죄를 인정하면 보다 경한 죄목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갈한다. 이런 경우에 피고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한 죄를 범하였거나 지어 무죄라 할지라도 심리를 요구하여 법정에 나서서 검사와 맞섰다가 가혹한 형벌을 받을것이 두려워 유죄를 인정한다. 변호인 역시자기에게 아무런 금전상리익도 주지 못하는 피고를 위해 시간을 랑비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검사와 비밀리에 협상하고 유죄를 인정하도록 피고를 회유기만하고 오히려 자기의 노력으로 《유리한 협상》이 맺어졌다고 피고에게서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고있다. 이렇게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소에 사건이 제기되면 판사는 단독으로

검사와 변호측사이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죄답변》에 따라 심리도 없이 판결을 내린다.

대륙법계나라들에서 적용하는 략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략식명령으로 피고에게 벌금 또는 몰수의 형벌을 가하는 간략화된 재판절차이다. 략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략식명령이라고 한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략식절차가 벌금과 같은 경한 사건까지도 피고인을 출석하게하여 심리를 하는것은 무익한 절차와 시간을 소비할뿐이라는 《소송경제상의 리념》에 부합될뿐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심리적《부담》을 덜어주고 법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략식절차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경범죄와 중간범죄에 대한 재판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떠벌이고있다.

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것은 형사소송 활동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해당 범죄의 엄 중성이 크든작든 재판소는 제기된 범죄사건을 정확히 조사심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야 한다.

죄상인정여부수속이나 략식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것은 《피고의 권리옹호》나 사건해결의 《신속성》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근로인민대중에게 부당한 형벌을 강요하는 반 동적이고 불평등한 재판소의 활동을 감싸기 위한데 그 진의도가 있다.

부르죠아형사재판에서의 날치기는 결석재판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피고의 참가없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이란 원칙상 있을수도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부르죠아반동들은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당사자처분주의》를 내걸고 《피고가 결석재판을 승인하거나 소환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 하는 경우》 등을 조건으로 결석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고있다. 이것은 법에 규제된 피 고의 《기회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저들의 요구에 맞게 사건을 과장날조하여 인민들에 대 한 재판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된다.

실지로 부르죠아반동들은 재판과정에 자본주의제도와 저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이 폭로규탄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참석도 없이 재판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것을 상투적수법으로 삼는다.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이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이라는것은 다음으로 재판소의 활동이 정부의 통제와 조종밑에 진행되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소는 외형상 《재판소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활동에서 그어떤 간섭과 통제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것처럼 분식되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조종밑에 재판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부르죠아정부가 재판기관을 철저히 자본가계급의 대표자, 심복들로 꾸림으로써 정부에 철저히 종속되게 한다.

부르죠아혁명초시기에 재판소독립을 론하였던 리론들은 기만적이나마 《국민에 의하여 선거된 판사》들로 재판소를 꾸릴것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재판소들을 선거되는 판사들로 운영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초기인 1790년 8월 16일

재판소조직에 관한 포고에는 《판사들은 그들의 권한이 미치는 공민들이 선거》한다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판사선거에는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참가할 수 없었다. 판사로 선거될수 있는자도 5년간의 판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30살이상의 남자만이 되였다.

자본주의국가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형식상이나마 존재하였던 《국민에 의한 판사선거》와 같은 《민주주의》형식들은 모조리 없어지고 정부에 의한 판사임명제도가 그를 대신하였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재판소는 선거되는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 조직된다.

미국에서 련방재판소 판사들은 대통령이 형식상 국회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영국에서 최고재판소의 대법관과 상임재판관, 상소재판소의 재판관은 수상의 지명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고등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의 지명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지방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집권당정부의 주요내각성원인 대법관이 임명한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왕이 임명하며 나머지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내각이 임명한다음 왕의 인증을 받고있다. 그리고 하급재판소 판사들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그중에서 고등재판소 장관만은 왕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판사가 최고사법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도이췰란드에서는 련방사법부장관이 임명한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판사의 직무에 올라앉는자들은 대다수가 부르죠아정당에 소속된 자들, 그것도 대통령과 정당소속을 같이하는자들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의모든 판사들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성원들로 임명되며 영국에서도 집권당의 당수인 수상 및 그가 속한 정당과 리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자들은 재판기관에 선출되지 못하고있다. 물론 비당파적임명방식도 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지방들에서 리용되며 극히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죠아정부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재판소는 정부안의 사법행정부서와 검찰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조종을 받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을 독점한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반동적인 착취계급은 저들의 요구와 리익을 권력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법권의독립》도 완전히 줴버리고 정부가 재판활동에 적극 관여할수 있게 하는 통치체계를 확립하고 권력실현의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재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정부안에 사법행정부서를 내오고 그것을 통해 재판소의 재판활동에 대한 통제와 조종을 할수 있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대륙법계통의 자본주의나라들이 그 전형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부가 재판기관의 모든 형사재판활동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한다. 때문에 최고재판소는 정기적으로 사법부장관에게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회보하며 또 사법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줄것을 요구한다. 사법부장관은 서면으로 지시를 주며 그것은 형사사건기록에 첨부된다. 이것은 모든 재판소들이 다 정부에 소속되여있으며 사법부에 종속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는것을 말해준다.

특히 부르죠아반동들은 제국주의시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거하게 되였으며 재판기관을 정부의 통제속에서 정부의 독단통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패로 리용하고있다.

이와 함께 부르죠아정부는 정부의 앞잡이인 검찰기관을 내세워 재판소의 활동이 행정부의 정책집행과정으로 되도록 조종, 통제하고있다. 부르죠아검찰기관이 가지는 그러한 권한이 바로 기소권과 기소유지권이다.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검찰기관의 기소권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재판행정을 통제하고있다.

재판소가 취급하는 사건들은 검사에 의해 선정되고 검사의 기소범위에 국한된다. 검사는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결정권을 행사하여 정부가 묵인하고 비호하는 사건들은 어느때든 기소를 철회할수 있으며 반대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기소를 제기한다. 특히 재판소의 형벌결정도 검사의 기소조항에 준하여 내려지게 된다.

검찰기관의 기소유지권은 상소로써 기소에서 예견한 형사책임추궁의 요구를 끝까지 실현할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자본주의국가형사소송에서 피고,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를 비롯하여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상소권은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잘 접수되지 않을뿐아니라 그에 대한 심리가 오래 걸리는 반면에 검사의 상소는 상급재판소에 즉시 접수되여 지체 없이 심리에 넘어가며 원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사 회에서 검찰기관의 상소가 재판소의 명줄을 거머쥔 정부의 요구이며 압력이기때문이다.

재판소가 정부에 의해 계급적으로 선발된자들로 구성되고 그들의 활동이 정부의 통제밑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재판소가 부르죠아독재실현에 복무하는 하수인으로밖에 달리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이처럼 자본주의국가의 형사재판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철두 철미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부르죠아독재의 실현수단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의 반동성과 기만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 공화국형 사재판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본주의국가형사재판, 부르죠아독재